

제242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 개최일시 : 2015. 12. 18.(금) 09:30
- 심의안건 : 총 5건(조례공포안 1, 조례안 3, 규칙안 1)
- 심의결과 :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연번	의안번호	제출부서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1	67	안전치수방재과 (이상욱의원발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	원안가결
2	68	재 무 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3	69	주 택 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	70	주 택 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71	교 통 지 도 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 결 서

1. 의안번호: 제67 ~ 71호

2. 의 안 명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	원 안 가 결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 안 가 결
③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 정 가 결
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 안 가 결
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원 안 가 결

3.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외 2

4. 의결주문: 원안가결 4건, 수정가결 1건, 부결 건, 심의보류 건

5. 의결이유: 회의록 참조

6. 근거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24조
위 안전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의장:

부의장:

(행 정 관 리 국 장)위원:

(기 획 경 제 국 장)위원:

(복 지 환 경 국 장)위원:

(도 시 관 리 국 장)위원:

(안 전 건 설 교 통 국 장)위원:

(보 건 소 장)위원:

위 정 분 입 니 다

2015. 12. 18.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인

제242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록

의안번호	제67~71호	제출부서	재무과 외 3	제 출 자	기획경제국장 외 2
회의개최 및 의결일시	2015. 12. 18. (금) 09:30	회의장소	부구청장실	참석위원	6인
심의안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 외 4건			의결내용	별지 참조
2015. 12. 18.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div style="text-align: left;"> <p>참석자</p> <p>의 장</p> <p>부 의 장</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p>위 원</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 서명 생략</p> <p>“의결서 참조”</p> </div> </div>					

회 의 록

□ 회의개최 개요

가. 일시: 2015. 12. 18.(금) 09:30

나. 장소: 부구청장실

다. 참석자: 조례규칙심의위원, 소관부서장 및 팀장

라. 배석자: 기획예산과장, 의회법무팀장

□ 진행 및 의결사항

○ 간사

- 지금부터 제242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회의는 부의장이신 부구청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 부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광진구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오늘은 조례공포안 1건, 조례안 3건, 규칙안 1건 총 5건을 심사하겠습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치수방재과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 별표의 놀이터 공통사항에 페타이어 바닥재 안전성이나 모래 오염 문제가 빠져 있는데 추가할 수 없는 지?

○ 안전치수방재과장

- 이번에 유지관리비 예산이 편성되었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전수점검으로 교체 등의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 안전건설교통국장

-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점검은 다른법에 의해서 점검을 끝낸 상태입니다.

○ 부의장

-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그런 부분을 추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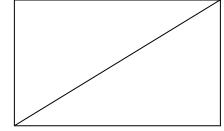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공포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 제6조제1항제2호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년 이상 같은 일정기간을 뒤야하지 않는지?
- **부의장**
 - 그 부분은 운영상의 묘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6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제5조의2제2항에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정의규정에 뒤야하지 않는 지?

- 도시관리국장
 - 상위법령에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 그럼 이 부분은 “제1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7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관리팀장
 - (제안설명)
- 부의장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전원
 - 없습니다.
- 부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부의장
 - 이상으로 제242회 광진구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끝)



의안번호	제67호
의결 년월일	2015. 12. 18. (제242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

제출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출년월일	2015. 1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 (이상욱 의원 발의)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 나. 관리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안 제3조 ~ 안 제4조)
- 다. 어린이놀이시설에서의 행위 제한 사항(안 제5조)
- 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안 제6조)
- 마.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결과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8조)
- 바. 안전감시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10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공포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
- 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①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음주, 흡연, 가무, 방뇨 행위
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감시원) ① 구청장은 영 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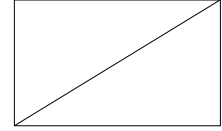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세부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 고리('S' 후크)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구 분	점 검 항 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흙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슌,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슌,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구 분	점 검 항 목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짐 · 건너는 기구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영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의안번호	제68호
의결 년월일	2015. 12. 18. (제242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출자	기획경제국장 길수철
제출년월일	2015. 1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규칙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사항 정비(안 제6조제1항)
- 나. 변상금 징수유예 관련 조항 정비(안 제3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11. 30. ~ 12. 20.)
 - (3) 규제심사 : 해당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0조와 제91조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분할납부”를 “제90조, 제91조, 제91조의2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9호의3”을 “제20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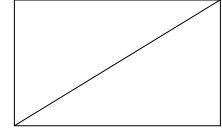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민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남녀성비를 고려하여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p> <p>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p> <p>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유·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p> <p>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p> <p>② ~ ④ (생략)</p>	<p>제6조(구유재산심의회)의 구성) ① - ----- ----- ----- ----- ----- ----- ----- ----- -----</p> <p>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u>제90조와 제91조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분할납부</u>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2. (생략)</p> <p>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u>제19호의3</u> 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신설></u></p>	<p>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 --- <u>제90조, 제91조, 제91조의2에 따른 변상금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서</u>---</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제20호의3</u> -----</p> <p>4. <u>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20호의4 서식)</u></p>



의안번호	제69호
의결 년월일	2015. 12. 18. (제242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제출년월일	2015. 1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택법」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미흡한 임의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나. 상위법 인용조항 수정 반영(안 제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43조의3, 제49조 및 제5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1. 25. ~ 12. 16.)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주택법」 제43조제9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 43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활성화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신 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 43조제9항----- ----- ----- -----.</p> <p>제5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p> <p>① 구청장은 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p> <p>1.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p> <p>2. 법 제50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p> <p>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할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한다.</p>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2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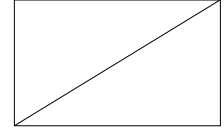
3. 미첨부 사유

-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관리국 주택과 행정6급 유동선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신현식



의안번호	제70호
의결 년월일	2015. 12. 18. (제242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도시관리국장 이기배
제출년월일	2015. 1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주택법」 제52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기준 정비(안 제4조)

- 위원의 구성 기준 변경 : 「주택법 시행령」 제67조 반영

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제52조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나. 합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11. 30. ~ 12. 16.)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선과제 반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의 후단을 삭제하고,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제5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구성) ① (생략)</p> <p>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광진구청장 (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u>자</u>로 한다. <u>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은 각각2인으로 한다.</u></p> <p>1.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p> <p>2.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p> <p>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p> <p>4. 주택관리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덕망을 갖춘 자</p> <p>5. <u>고문변호사</u></p> <p>6. <u>구의원 1인</u></p> <p>7. <u>구 소속 공무원</u></p> <p>제5조(기능) 위원회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관리 등을 위하여 심의 · 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6. (생략)</p>	<p>제4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u>각 호의 어느 하나</u>-----</p> <p>-----<u>사람으로</u>-----</p> <p>----. <u><후단 삭제></u></p> <p>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p> <p>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p> <p>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p> <p>5. 그 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p> <p>제5조(기능)-----</p> <p>-----</p> <p>-----</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u></p> <p>7.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규정 제2호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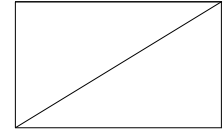
3. 미첨부 사유

-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도시관리국 주택과 행정7급 차연주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신 현 식



의안번호	제71호
의 결 년 월 일	2015. 12. 18. (제242회)

심
의
의
결
사
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건설교통국장 김해성
제출년월일	2015. 12.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노외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차량 운행제한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주차요금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대상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에서 “노상주차장”으로 개정하고, 상위법 체계에 맞춰 조문 이동(안 제10조의4)
- 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상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개정(안 별지 제6호서식)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제8조의2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2) 입법예고(2015. 11. 20. ~ 12. 10.)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규제개선과제 반영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10조의4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영주차장”을 “노상주차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제2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새로운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 교통지도과 행정8급 문 금 숙(450-7963)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장 김 봉 규